



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(공사)

시민행복시대를
열겠습니다

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

- 전 명: 2026년 논산시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공사
- 위 치: 논산시 관내 공공시설 주차장 일원
- 사 업 량: 가족배려주차구역 도장 56면, 가족배려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28개
- 공사기간: 착공일로부터 29일
- 공사구분: 전문공사
- 공사금액

(단위: 원)

추정가격	부가가치세	기초금액	관급자재	추정금액
46,096,364	4,609,636	50,706,000	-	50,706,000

2 견적제출 및 개찰

- 견적서 제출기간: 2026. 8. 10.(월) 14:00 ~ 2026. 8. 14.(금) 14:00
- 개찰일시 및 장소: 2026. 8. 14.(금) 15:00 논산시보건소 입찰집행관 PC
- 본 공사는 지역제한 2인 이상 전자견적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.
-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**총액견적** 대상이며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.
-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,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(www.g2b.go.kr)를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,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

※ 전산 장애 등의 문제로 전자입찰 참가(입찰 등록 및 투찰)가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(1588-0800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.

3

참가자격 및 제출서류

※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
-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(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)가 충청남도 논산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,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.
-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·습식·방수·석공사업(주력분야: 도장공사) 등록업체

4

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

- 입찰보증금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되 **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견적서 제출로** 갈음합니다.
-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.

5

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

-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$\pm 3\%$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자가 각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.
-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투찰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, 퇴직공제부금비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안전관리비, 품질관리비(이하 “국민연금보험료 등”)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.745%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며,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.
-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」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 결정 대

상자를 선정합니다.

-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**10일 이내**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참가자격 미달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.

6 견적제출의 무효
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.
-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. 입찰대리인은 견적 제출 당시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, 개찰 결과 선순위 업체는 참가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7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사항

- 본 공고는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·물품·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‘**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**’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향후 일정 기간 논산시와의 수의계약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8 청렴계약이행준수

-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논산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,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.
-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,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(날인)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9

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

-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,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.
- 견적제출자는 설계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,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.

※ 설계서 열람: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(☎041-746-8062)

10

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

-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.
-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이며, 지급확인제는 적용합니다. 다만,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합니다.
-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근로자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되는 등 관계 규정상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11

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

-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·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
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(제4조, 제9조)

-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
-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
- ③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
- ④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-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,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12 하도급 관련사항

-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및 하도급 승인·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,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3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 정산

- 견적 제출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퇴직공제부금, 안전관리비,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.
-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, 준공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관계 규정에 따라 감액 또는 정산합니다.

(단위: 원)

국민건강 보험료	국민연금 보험료	노인장기 요양보험료	산업안전 보건관리비	퇴직공제 부금	안전 관리비	품질 관리비	A값 합계
-	-	-	1,033,016	-	-	-	1,033,016

14 기타사항

-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.5%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.
-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, 공고문, 설계도서, 지방서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견적제출과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.

-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, 연기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(www.g2b.go.kr) 게재에 의합니다.
-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.
 -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: 논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(☎041-746-8014)
 - 사업내용: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(☎041-746-8062)
 - 전자입찰 이용안내: 나라장터 콜센터(☎1588-0800)
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8. 10.

충청남도 논산시 재무관

수의계약 배제사유

-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·파산·해산·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,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
-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(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)
-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, 담합행위, 입찰·계약 서류의 허위·위조 제출, 입찰·낙찰·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(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)
-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
 - ※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「낙찰자결정기준」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“4”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, 제2장의2 기술·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<별표>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. 이때 ‘입찰공고일’은 ‘안내공고일’로 ‘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’은 ‘견적서 제출마감일’로 본다.
-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·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,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, 불법하도급,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
-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
 - ※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.
-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
 1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(법인은 대표자)
 2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(배우자 포함)의 직계 존·비속인 사업자
 3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%이상을 소유한 자
 4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(배우자, 직계존·비속)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%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
 5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
-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
-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
- ⑩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(용역)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(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) 이상인 자. 다만,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(단, 제3절의 “1”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)